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제도적 현황과 전망

박 영 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품질관리과 과장

### I. 머리말

최근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LOHAS로 생활양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방식과 유통의 변화를 추구하는 관련 법률들이 활용되고 있다. 즉 「친환경농업육성법」·「농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법률간의 목적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목적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하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

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목적의 공통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들 법률 중에서 존재하는 농산물의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무농약(무항생제축산물)·저농약),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우수농산물인증(GAP)·농산물이력추적관리·지리적표시제·품질인증제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지역농산물 인증제가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저하되는 면도 있고, 소비자의 인지도 역시 저하되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자 안전농산물 인증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림부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육성과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2006년말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전체 농산물생산량 대비 6.2%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10%, GAP 농산물 5% 달성코자, 생산 기반 조성교육 및 유통 활성화 제고와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II. 친환경인증 현황 및 실적

### 1. 친환경농산물 인증

《 <http://enviagro.go.kr> 》

#### 1.1. 친환경농산물육성법 개정 발효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 7996호로 개정되고 2007년 3월28부터 발효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종전(4종류)에서 3종류로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새로 마련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 인증신청의 범위가 확대
  - 종전에는 생산자, 수입자에서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추가되었다.
- ※ 재포장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는 것
-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 허위표시 뿐만 아니라 허위광고 행위, 미인증품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표시를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 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 미달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 형의 확정 또는 인증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
- 개정전 법은 매년 인증심사를 받았으나
  - 무농약·저농약은 2년(종전:1년)으로 연장, 유기농산물은 1년마다 연장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가 시행
  - 친환경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성 유무 검토 의뢰 가능

- 농촌진흥청은 의뢰받은 자재의 제조공정을 검토, 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목록 공개

#### 1.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현황('07.10.2 현재) : 38개

홍살림,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협회,(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약스, (주)부강테크, (사)정농회,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오씨케이, 천안연암대학교산학협력단,영농조합법인학사농장, (주)스페이스,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사)삼무친환경생활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국립진주산업대학교산학협력단, 국립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주식회사푸른환경농업연구소,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여자대학교친환경사업단영농조합법인,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성농,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주)동부 하이텍

#### 1.3.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실적

★ 친환경농산물 비중 : ('02) 1.1% → ('04) 2.5% → ('06) 6.2% → ('07) 7.0%

★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 : ('02)12천호 → ('04) 29 → ('06) 80 → ('07) 90

#### □ 연도별 생산실적

연도별	건수	농가수	인증면적(ha)	출하량(톤)
1999	598	1,306	876	26,643
2000	704	2,448	2,038	35,406
2001	1,128	4,678	4,554	87,279
2002	2,919	11,892	11,240	200,374
2003	4,892	23,301	22,237	365,203
2004	5,820	28,951	28,216	46,735
2005	8,717	53,478	49,806	797,747
2006	11,481	79,635	74,995	1,128,093
2007.6	13,078	88,323	82,084	466,459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의 영향과 소비자들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높은 관심으로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의 프리미엄과 기대수익을 얻고자 친환경농산물 재배가 급격히 증가되었음.

□ 친환경농산물(국내생산) 종류별 인증품 출하량 단위 : 톤

년도별	종류별	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2,006.	곡류	172,079.3	10,935.9	11,801.0	53,391.5	95,950.9
	과실류	390,293.4	2,817.8	2,511.9	13,712.9	371,250.8
	채소류	423,567.1	37,969.5	21,243.0	135,938.5	228,416.1
	서류	25,220.6	2,584.2	3,001.7	5,855.7	13,779.0
	특작류	116,428.5	1,481.7	770.3	111,193.3	2,983.2
	기타	504.3	184.6	102.9	216.8	-
	계	1,128,093.2	55,973.7	39,430.8	320,308.7	712,380.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종류별 출하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곡류 15.4%, 과실류 34.6%, 채소류 37.5%, 서류 2.2%, 특작류 10.3%, 기타 0.1%로 과실류와 채소류가 인증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 시도별 친환경인증 현황

시도별	출하량(톤)	비중(%)	시도별	출하량(톤)	비중(%)
합계	466,459	100.0	경기	21,630	4.7
			강원	5,712	1.2
서울	116	0.2	충북	27,322	5.9
부산	4,422	1.0	충남	48,018	10.3
대구	2,647	0.6	전북	33,147	7.1
인천	4,111	0.9	전남	141,060	30.1
광주	516	0.1	경북	114,020	24.3
대전	1,239	0.3	경남	48,674	10.4
울산	1,541	0.3	제주	12,284	2.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 6월말 현재>

- 시도별 친환경인증 실적은 전남과 경북이 타 시도보다 앞서고 있음.

□ 친환경인증 종류별 실적

구분	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계
건수	1,655	5,375	6,048	13,078
농가수	7,242	23,465	57,617	88,323
인증면적(ha)	9,246	19,691	53,147	82,084
출하량(톤)	32,646	145,084	288,729	466,459
비중(%)	7.0	31.1	61.9	10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 6월말 현재>

○ 축산물 친환경인증 실적('07.9월말 현재)

구분	유기	무항생제	계
건수	51	80	131
농가수	70	103	173
출하량(톤)	1,185	521	1,706

- 인증종류별 실적을 살펴보면 저농약이 61.9%이고 유기농산물은 전년도 전환기유기가 유기로 포함되었으며 축산물의 무항생제는 '07. 3. 27이후 실적임

□ 친환경인증농산물 행정처분 실적

('03) 23건 → ('04) 75건 → ('05) 66건 → ('06) 223건 → ('07.9) 182건

- 행정처분의 종류 : 고발, 인증취소, 인증표시정지, 경고

1.4. 우수농산물 인증(GAP) 현황

□ GAP전문인증기관 지정 (28개)

농협중앙회, (사)한국생약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경대산학협력단, 글로벌유농인, 유진텍(주), 중부대 산학협력단, 조선대 산학협력단, 단국대 산학협력단, 한국인삼공사, (주)스페이스, 강원대 산학협력단,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정읍시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주)신세계 이마트, (주)한국환경농업, (주)삼성테스코, 전남대 산학협력단, 농업회사법인 통통, (주)동부하이텍, (주)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 충남대학교농업과학연구소,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영농

조합법인, 충북테크노파크전통의약산업센터, (주)판코리아, (주)코리아아그로,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삼성에버랜드(주)

□ GAP 인증 실적('07. 6월말 현재)

시도별	인증농가수	인증면적(ha)	생산계획량(톤)
합계	5,766	6,895	148,120
강원	232	360	4,479
경기	976	1,156	14,678
경남	612	569	8,447
경북	1,329	1,165	29,269
전남	742	1,123	34,584
전북	729	1,115	17,227

○ GAP 인증실적은 전남> 경북> 전북> 경기 순임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07. 9월말현재)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271	44	21	17	18	19	52	55	32	13

○ GAP시설은 경북> 전남> 경기> 경남 순임

1.5. 이력추적 등록 현황

○ 이력추적 대상 :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

□ 등록 실적('07.9월말 현재)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산자	건수	1,563	146	220	77	158	246	265	292	144
	구성원수	22,253	4,706	2,242	930	1,523	2,057	3,483	5,969	1,181
유통자(건)	539	113	47	21	31	41	92	119	66	9
판매자(건)	634	78	73	45	31	62	101	112	120	12
합계(건)	2,736	337	340	143	220	349	458	523	330	36

○ 이력등록 실적이 많은 순은 경북> 전남> 전북> 강원> 경기> 경남 순임

1.6. 지리적 표시

□ 지리적표시 등록

○ 농산물(37) :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주,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안동포,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사모시,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쌀,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 임산물(13) : 양양송이, 정홍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무,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남해창선고사리

III. 농산물 인증제

1. 친환경농산물 인증

1.1. 친환경농산물의 법적 근거 : 동법 제 17조

1.2.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목적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1.3. 인증의 종류

- 농산물 :
  - 유기농산물 : 3년이상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량의 1/3 사용
  - 저농약농산물 : 농약·화학비료 1/2이하 사용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음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1.4. 인증신청

-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 전문인증기관(38개소)
- 신청자의 범위 : 생산자, 수입자,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
- 신청서 첨부자료 : 신청서와 생산계획서 및 영농관련자료,
- 신청처리 및 기한 : 42일, 당해농산물의 작기 2/3를 확인 할 수 있는 시기

1.5.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경영관련자료, 사육장,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선택·번식방법 및 입식, 전환기간,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의 처리 등

1.6. 인증심사

- 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 심사계획통보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1.7. 인증 유효기간

- 유기재배(1년), 무농약·저농약(2년)
-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출

1.8. 인증품 표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인증번호, 생산자(수입농산물은 유통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 산지, 생산년도, 무게

1.9. 인증농산물의 사후관리

- 생산·출하과정 조사

- 시판품조사
- 행정처분 : 인증취소, 표시정지
- 벌칙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부정한 방법 인증, 허위표시, 허위광고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표시 변경·사용정 위반
  - 3백만원 과태료 : 검사행위를 거부 방해·기피한 경우

1.10.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를 친환경농자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및 유기질비료, 해조류, 톱밥, 나무숯, 목초액, 황산가리, 석회질마그네슘암석, 염화나트륨, 황, 석회소다 염화물, 석회질 및 규산질비료, 미생물제제 등
- 병해충관리를 위한 사용가능자재
  - 제충국제제, 동·식물유지, 소금 및 소금물, 식초 및 천연산, 담배잎차, 목초액, 보르도액, 유황, 맥반석, 탄산칼슘, 파라핀유, 키토산, 미생물 제제, 에틸알콜, 페르몬 등

2. 주요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 국	일본	한 국	중 국
유기 재배	유기 (전환기)	유기 (전환기)	유기 (전환기)	유기 (전환기)	친환 (전환기)	AA급 전환기
저투입재배	-	(통합생산 IP)	(종합병해충관리, IPM)	(특별재배)	친환농산물	무농약 저농약 녹색식품 A급

주 : ( )내에 제시된 단계는 실제로 인증대상 단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분류된 단를 나타낸 것임.

## 2. 우수농산물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2.1. 목적

- 우수농산물관리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 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
-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장에 식탁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구축함

### 2.2. 관련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7조의 2

### 2.3. GAP인증

2.3.1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인증기관(28개소)

2.3.2 인증기간 : 1년

2.3.3 인증기준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4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
- 필수기준 : 74항목, 권장기준 : 36항목,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 실시, 종자 및 묘목의 선정, 재배 전 토양관리, 농기구관리, 비료 및 양분관리, 물 관리,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병해충방제 및 농약 살포, 잔류농약 분석 및 제시, 농약의 보관 및 관리), 수확작업,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관리시설(총32항목), 쓰레기 및 유해물질 관리,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환경문제, 교육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
- 시설지정 기준 : 조직 및 인력, 시설(건축물, 작업장, 수확 후 관리설비, 수처리시설, 저장(예냉)시설, 수송운반설비, 위생관리, 기타시설, 관리유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규정

- 시설의 종류

구분	내용	예시
비세척농산물	모든 공정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	
단순세정농산물	전처리공정으로 농산물의 이물질 제거나 외관향상을 위하여 물로서 단순 세정하는 농산물 - 포장지에 세척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	- 단순세정한 감귤 - 단순세정한 당근
세척농산물	세척공정을 거쳐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한 농산물 - 포장지에 세척농산물로 표기된 제품	- 안심사과 - 씻어낸 포도 - 샐러드 등 신선편이 농산물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2.3.4. 대상품목 : 100품목(농림부고시 2007-29) 식량작물(10), 특용작물(4), 약용작물(32), 버섯(10), 채소(28), 과수(16)

### 2.4. 인증 절차

#### 2.4.1. 인증신청

- 신청기관 : 민간인증기관(28개소)
-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서류 : 신청서와 지적도 및 생산계획서
-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과 심사원 출장비

#### 2.4.2. 인증심사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사 사항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한 자재, 수확 후 관리계획

- 심사결과 판정

#### 2.4.3. 인증표시

- 로고, 원산지, 품목(품종), GMO여부, 중량, 등급, 생산자(작목반)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이력추적관리번호

2.4.4. 유효기간 연장



2.4.5. 사후관리

- 생산과정조사
- 시판품조사
- 안전성조사

3.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요령

- 3.4.1. 등록 및 사후관리기관 : 농관원 지원 및 출장소
- 3.4.2.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수시
- 3.4.3. 등록유효기간 : 3년

2.5. GAP와 친환경인증의 차이점

구 분	GAP	친환경인증
마 크		
법 적 근 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품 목	GAP재배관리지침에 있는 농산물(100품목)	모든 농산물 가능(인증농가 또는 작목반을 중심으로 인증)
표 시 항 목	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 등급, 무게(갯수), 생산자 또는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등급 생략 가능(품목, 산지, 품종, 생산연도, 무게(갯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규 격	표준규격의 특·상·보통	규격 제한 없음
인 증 구 분	단일	유기, 무농약, 저농약
자 제 제 한	농약, 비료사용은 권장사용기준 준수	윤작·녹비작물 재배 권장,농약, 비료 미사용 또는 최소화
인 증 기 관	전문인증기관(생산자 또는 유통업체 등) ※ 농관원:전문인증기관 지도·감독	정부 및 전문인증기관
인증주체	정부	농관원
	민간	농협, 생약협회 등 민간인증기관
이력추적관리제도	GAP농가는 이력추적 관리 필수	인증번호 표시로 확인하면 추적가능, 유기인증선도농가 대상으로 '08년 도입예정
인증제도 개편	-	09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10년 유기·무농약 체제로 전환
수 수 료	5만원	3만원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http://www.form2table.kr>

3.1. 목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안전관리와 제고관리의 효율화

3.2.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5

3.3. 대상품목 : 우수농산물인증과 동일

3.5. 등록신청

3.5.1. 의무등록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 규정된 것 없음

3.5.2. 희망등록자

-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 우수농산물(GAP) 인증품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 ※ 생산자·유통자·판매자의 개념
  - 생산자 : 농업인·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 유통업자 : 농산물 수확후 관리시설 대표자,

도매업자

- 판매업자 : 소매업자(중·대형할인점 및 마트 등), 수출업자

3.5.3. 등록사항

- 생산단계
- 유통단계
- 판매단계

3.5.4. 등록심사

3.5.5. 이력등록자의 준수사항

- 생산단계 : 생산정보, 출하정보
- 유통단계 : 입고·출고정보
- 판매단계 ; 입고정보

3.6. 관리번호 부여

○○○○○ - ○○ - ○○○○○○○○  
(농관원) - (년도) - (로트번호)

3.7. 사후관리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4. 농산물 안전성조사

4.1. 관련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 인삼산업법)

4.2. 조사개요

4.2.1. 조사대상 유해물질 :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유해미생물, 기생충

4.2.2. 조사점수 : '07년도 65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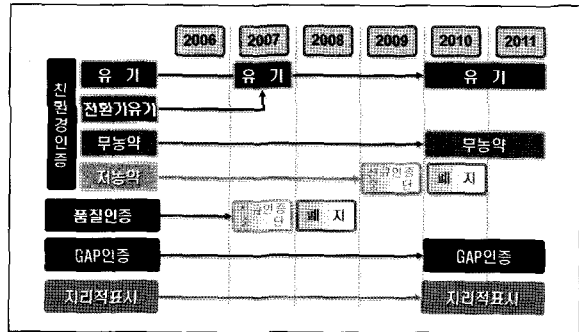
4.2.3. 조사결과 부적합품 처리 :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

4.3. 년도별 부적합률

- ('03) 3.1% → ('04) 2.7% → ('05) 2.2% → ('06) 1.6%

IV. 앞으로의 전망

1. 농산물인증 제도 개선



2.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육성 지원

2.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 ('13년까지)

- 1읍면1지구 친환경농업지구 1500개 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50개소 조성

2.2. 친환경농업 지원 및 제도개선

- 지원면적 5ha 폐지 및 지급기간 연장(현 3년 → 5년)
-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제 도입 확대 : 유기재배 전농가
- 친환경농산물 전용물류센터 건립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적극 발굴 지원
-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강구
- 입체적 사후관리 강화 :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검토

2.3.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조사건수 : ('05) 62,000건 → ('07) 65,000건 → ('10) 75,000건
  - 조사를 농산물 이외에 농경지, 농업용수, 농업용 자재까지 확대
-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공유 확대 : www.agros.go.kr



## 2.4.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확대

- '13년까지 GAP 인력 양성, 위생시설·장비 등 지원하여 유통비율 10%로 확대
  - ('05) 0% → ('08) 1% → ('10) 5% → ('13) 10%
-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GAP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추적관리기반 구축·위생시설 확충 등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2.5. 이력추적관리제 확대

- www.farm2table.kr 활성화로 '10년까지 농산물 유통량의 5%까지 확대
  - 이력추적가능 농산물 비율 : ('05) 0% → ('08) 1% → ('10) 5%

## V. 맺는 말

- 친환경농업과 GAP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로 안전한 농식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 노력
- 농산물도 국제규격에 맞는 생산·유통 시스템 정착 유도 조기에 글로벌화
-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과 GAP시스템이 융합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 공급